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봉양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05월 25일
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 (1명)
찬 성 자 : 이병도, 김화숙, 이정인,
김동식, 김상훈, 박순규,
이승미, 김기덕, 김용연,
오현정, 김소양, 이준형,
이영실, 서윤기, 김혜련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.
- 서울시 저소득·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·취약계층의 권리 보호,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8호)
- 나. 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저소득·취약계층의 권리 보호,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
9. 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</u></p> <p><신 설></p> <p>9. ~ 11. (생 략)</p>	<p>제4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저소득·취약계층의 권리 보호,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</u></p> <p>9. <u>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</u></p> <p>10. ~ 12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